

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세칙

제정 2008.12.30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운영세칙은 건축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위원회 운영

제2조(회의)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. 다만, 「건축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소속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참석하여 표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.

1. 위원 및 간사
2. 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획단 소속 직원
3. 안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
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제3조(안건의 제출)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.

제4조(서면의결) 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안건의 사전검토) ① 위원장은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에 앞서 분과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전문적인 조사·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자문단 또는 기획단으로 하여금 안건을 연구·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) ① 위원장은 위촉위원 상호간 협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촉위원 중 1명을 운영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따로 지명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의 운영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분과위원회

제7조(분과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에는 영 제10조에 따라 정책조정분과위원회,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및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.

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,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다. 다만,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.

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위촉위원이 1개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 분과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명의 위촉위원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⑥ 당연직 위원은 원하는 경우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⑦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획단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8조(분과위원회의 회의)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
②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. 다만, 영 제5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소속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참석하여 표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.

1.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
2. 위원장 및 위원회의 위원
3. 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획단 소속 직원
4.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
5.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제9조(분과위원회의 직무)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

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·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합동연석회의)**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합동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,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.
- ③ 합동연석회의의 의사결정방식은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.

제4장 자문단

- 제11조(자문단의 구성)** ① 위원장은 특정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- ② 각 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은 단장(이하 “자문단장”이라 한다)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, 자문단장 및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③ 자문단의 존속기간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당해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및 자문위원의 임기를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획단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- 제12조(자문단의 회의)** ① 자문단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- ② 자문단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자문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- ④ 자문단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자문단의 직무) 자문단은 위원장이 지정한 특정한 과제에 대

하여 전문적인 검토·자문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장 민간전문가단

제14조(민간전문가단의 구성 등) ① 위원장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단체, 학계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② 민간전문가단은 건축, 도시설계, 조경 등 전문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전문가 추천요청을 하는 때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단을 활용하여 민간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.

제15조(민간전문가단 구성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자격) 제1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단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회가 건축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·전문적 식견 및 사명감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제6장 보칙

제16조(회의록) 위원회·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안건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배석자 성명
3.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
4.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
5. 그 밖에 심의와 관련된 주요 참고사항

제17조(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) 위원회(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을 포함한다)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(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의견을 제출한 위원을 말한다)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·안전검토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위임)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, 분과위원회 또는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장 또는 자문단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